

[별표 4] <개정 2014.11.19.>

**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** (제8조제2항관련)

| 구 분        | 검 사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기초·지반검사 | 가.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: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나.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탱크 :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|
| 2. 충수·수압검사 |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용접부검사   |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암반탱크검사  |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